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11.02.28

발 의 자 : 김수진 위원외 8인

1. 제안이유

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 하게 보호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·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강화 등 지역의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고 아동·여성폭력의 사전 예방과 보호·치료 등으로 아동·여성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.
- 나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 하여야 함 (안 제4조).
- 다.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관련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(안 제5조)
- 라.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·운영함 (안 제7조)
- 마. 아동·여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4조)

3. 제정근거

- 가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나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다. 「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4. 조 례 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필요 (소관부서와 협의완료)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나. 관계법령 : 따로붙임
- 다.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
2. “아동·여성폭력”이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,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, 학교폭력, 유괴 및 실종 등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을 예방하고,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,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아동·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)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·치료를 위하여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6조(관련정보의 제공)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역연대의 설치)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,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(이하 “지역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8조(지역연대의 구성)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2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
3.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
4. 초·중·고등학교, 교육청 등 교육기관
5. 경찰,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 경찰·사법 관련 기관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·여성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

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⑤ 아동·여성 보호를 위하여 전문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지역연대의 기능) 지역연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·추진 및 점검
2. 아동·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
3. 위기 아동·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
4. 지역 내 아동·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
5. 아동·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
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한 사항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, 그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
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)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제13조(수당 등) 구청장은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업비의 지원)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의한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1. 2. 5] [법률 제10038호, 2010. 2. 4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,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4.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
5.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(經費)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1. 1. 1] [법률 제10261호, 2010. 4.15, 제정]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

야 한다.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 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 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 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
 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 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 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1. 1. 1] [법률 제10261호, 2010. 4.15, 타법개정]

제3조(국가 등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,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(이하 "성매매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
2.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(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)의 설치·운영

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“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”



마포구

Digital Mapo

수신자 마포구의회의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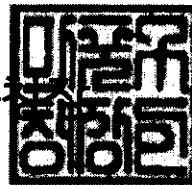
(경유)

제목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송부

1. 마포구 의회 785(2011. 2. 21)호와 관련입니다.
2. 마포구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을 수반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검토하여 송부합니다.

붙임 :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1부. 끝.

마포구



★여성정책팀장 **김경숙** 가정복지과장 **강선숙** 주민생활국장 **정상택** 부구청장 **02/24 김영호**

협조자

시행 가정복지과-6117 (2011.02.24.) 접수 마포구의회-887 (2011.02.25.)
우 121-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70 /http://www.mapo.seoul.go.kr/
전화 02)3153-8871 /전송 02)3153-8899 / kskim0070@mapo.go.kr / 공개

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

조례안 제명	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
발의의원	김수진 위원 외 8인
소관부서	가정복지과
상임위원회명 및 상정예정일	복지도시위원회
사전보고 단계	-2011년 지역연대사업비가 이미 국시비 배정되었음 (※ 국시비 7,200천원, 구비수반없음)
주요내용	-아동·여성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-아동·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-아동·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-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-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
검토의견	-조례안의 내용 전반에 대하여 동의함 -수정이 필요한 조항 : 조례안 제14조(사업비의 지원) 중 “관련기관 또는 시설에” 문구삭제 요망. 삭제사유는 필요한 사업비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임